



# 都·小賣業動態調查 指針書

1996



통계청자료실



B0003531

統 計 廳

310.111  
통계청  
1996  
22



# 都·小賣業動態調查 指針書

1996

統 計 廳



061229

# 목 차

I. 조사개요 .....	3
1. 조사연혁 .....	3
2. 조사목적 .....	3
3. 조사대상 .....	3
4. 조사단위 .....	5
5. 조사사항 .....	5
6. 조사시기 .....	6
7. 조사방법 .....	6
8. 집계 및 공표 .....	6
II. 조사표 작성시 유의사항 .....	7
1. 일반적 유의사항 .....	7
2. 실사시 유의사항 .....	7
III. 조사표 기입방법 .....	9
1. 연    월 .....	9
2. 사무소부호 및 사업체번호, 조사담당ID번호, 유고코드 .....	9
3. 사업체명 .....	9
4. 전화번호 .....	9
5. 소 재 지 .....	9
6. 조사표 작성 근거 .....	10
7. 영업형태 .....	10
8. 월간영업일수 .....	10
9. 매장면적 .....	11

10. 주요 취급상품 .....	11
11. 월간판매액 .....	12
12. 월간구입액 .....	13
13. 월말재고액 .....	13
14. 종사자수 .....	15
15. 증감내용 및 기타 변동사항 .....	16
<참고> 업태별 유의사항 .....	18

## N. 조사표 내용 검사 방법 .....

1. 항목별 내용검사지침 .....	23
가. 사무소부호 및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	23
나. 영업형태 .....	23
다. 매장면적 .....	23
라. 주요 취급상품 .....	24
마. 월간판매액 .....	24
바. 월간구입액, 월말재고액 .....	24
사. 종사자수 .....	24
아. 증감내용 및 기타변동사항 .....	24
2. 사업체관리 요령 .....	25
가. 사업체관리 개요 .....	25
나. 사업체관리 방법 .....	25

## V. 조사표 전송 방법 .....

1. 조사표 전송전 점검사항 .....	29
2. 조사표 전송 .....	29
<부록 1> 도·소매업의 업종별 조사범위 .....	34
<부록 2> 산업분류와 도소매업 업종분류 연관표 .....	40
<부록 3> 종합소매업 상품분류 .....	47
<부록 4> 사업체 변동보고서 작성요령 .....	49
<부록 5> 조사기록부 작성 및 활용방법 .....	50
<부록 6> 사무소, 출장소 및 복무위탁지별 사무소부호 및 USER-ID .....	53

# I. 조사개요

## 1. 조사연혁

< 승인번호 제10123호 >

작성기간	기준년도	지수명칭	대상처	작성기관
1965. 1~1970. 10	1965년	서울 소매 판매액지수	93	한국은행 조사통계국
1970. 11~1977. 6	1970년	서울 도·소매 판매액지수	827	
1977. 7~1982. 6	1975년	"	1,440	"
1982. 7~1988. 2	1980년	전국 도·소매 판매액지수	3,400	"
1988. 3~1993. 2	1985년	"	4,000	통계청
1993. 3~	1990년	"	4,500	"

## 2. 조사목적

전국 도·소매업 사업체의 경영 실태를 파악하여 경기동향 분석 및 유통 산업 부문의 발전지원을 위한 각종 정부시책 자료를 얻음과 아울러 민간기업 경영에 참고 자료를 제공한다.

## 3.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G.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중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도소매업종과 이들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 (소비자용품수리업 제외)

본조사의 대상 업종 및 대상 사업체는 다음과 같다.

### 가. 대상업종

#### (1) 도매업 (상품중개업, 무역업 제외)

구입한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없이 소매업자, 산업사용자, 단체, 기관, 관공서,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업종

- 농축산물, 음식료품, 담배 등을 도매하는 사업체
- 각종 가정용품을 도매하는 사업체
- 연료, 금속제품, 건설자재, 방직용섬유 등 산업용 중간재 및 재생 재료를 도매하는 사업체

- 농업, 건설, 광업, 사무용, 의료용 등 산업관련용품을 도매하는 사업체
-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도매하는 사업체
- 단, 도매업 중 상품중개업, 무역업에 해당하는 다음의 사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를 중개하는 상품중개인, 수탁 및 대리판매인, 대리구매 및 대리수집상, 무역중개인, 농산물공동판매조합등 상품중개업체
  - 자기 계정으로 구입한 전문 또는 종합상품의 대외거래(수출·입)만을 전업으로 하는 사업체(국내 도소매 활동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취급상품에 따라 도소매업체로 분류할 수 있다.)

## (2) 소매업

구입한 상품(새로운 상품,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백화점, 점포, 노점, 우편주문판매소, 소비조합, 행사인, 시음장 등에서 개인, 가정 및 소비자용품을 일반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업종 (단, 특수 소매업, 소비용품수선업은 제외)

### (가) 일반소매업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수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특정상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업종(특정 신상품 일반소매업, 특정 중고품 일반소매업 포함)

### (나) 종합소매업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업종

#### 1) 백화점

단일경영 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시설을 갖추어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매장면적 3,000㎡ 이상으로 50% 이상 직영(임차의 경우 30% 이상 직영)하는 대규모 종합소매업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체는 여러개 매장으로 구획되어 의식주에 관한 각종 상품이 판매되는데 통상 명칭이 백화점, 쇼핑센터 등으로 불리운다.

#### 2) 슈퍼마켓

단일 경영 체제하에 식료품을 위주로 각종 상품을 진열하고 자기구매방식(셀프서비스)으로 운영되며 매장면적이 서울시의 경우 250㎡ 이상, 기타지역의 경우 165㎡이상인 종합소매점을 말한다.

나. 조사 대상 사업체

- (1) 전국 시부지역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중에서 표본으로 선정된 사업체
- (2) 제외되는 사업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체
  - 일정 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통신판매, 배달판매 또는 이동판매 및 기타 비매장식 판매방법에 의하여 각종상품을 소매하는 사업체 (노점, 행상, 통신판매사업체 등)
  - 출입이 입장료, 허가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사업체 이용 범위가 특정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사업체, 즉 영화관, 운동장, 역홈, 고궁, 군병원, 관공서, 학교, 회사 등의 구내 매점
  - 외국기관 또는 주둔 외국군이 경영하는 사업체
  - 다른 상품은 취급하지 않고 담배, 복권, 버스표, 우표만 판매하는 업체
  - 겸영업체로서 주된 사업이 도매 또는 소매업이 아닌 사업체

4. 조사단위

조사의 단위는 개개의 사업체(점포)이다. 여기서 사업체란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소유권 또는 단일 경영체제 아래 재화의 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의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개개의 경제 단위를 말한다. 동일 구내에서 동일사업주가 직영하는 사업이 여러가지 있을 경우에는 모두 동일한 사업으로 보아 하나의 사업체로 조사한다. 동일 구내가 아닌 장소에서 동일주체가 별도로 경영하는 사업체와 동일 장소에서 경영주체를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체가 있을 때는 각각 별개의 사업체로 본다.

5. 조사사항

- |               |            |           |
|---------------|------------|-----------|
| 가. 사업체명 및 소재지 | 나. 영업형태    | 다. 월간영업일수 |
| 라. 매장면적       | 마. 주요 취급상품 | 바. 월간 판매액 |
| 사. 월간 구입액     | 아. 월말 재고액  | 자. 종사자수   |

## 6. 조사시기

가. 조사대상기간 : 매월 1일 ~ 말일

나. 조사실시기간

- 기 장 업 체 : 매 익월 1일 ~ 15일
- 미기장 업체 : 매 익월 1일 ~ 7일

다. 조사표 제출방법

- 조사표 작성 제출 마감일(매월 19일)전이라도 조사표가 완료되면 수시로 단말기에 입력을 하며,
- 전송은 APPEND 명령에 따르지 않으므로 여러대의 단말기에서 입력할 경우 모든 자료의 취합은 관리용단말기(00)에서 하고, 중복 및 누락확인 작업을 한 후 자료전환 작업을 거쳐 단 한번에 각 사무소의 전 조사표를 전송하여야 한다.

## 7. 조사방법

- 조사담당자가 조사대상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타계식으로 조사한다.

## 8. 집계 및 공표

- 익월 말에 공표하여 한국통계월보 등에 게재한다.



## Ⅱ. 조사표 작성시 유의사항

### 1. 일반적 유의사항

- 가. 숫자는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 기입하여야 한다.
- 나. 조사표 기입은 반드시 청·흑색 볼펜 또는 잉크로 기입하여야 한다.
- 다. 단위미만의 숫자는 사사오입하여 정수로 정리한다.  
예) 3.6 = 4 (금액, %등)
- 라. 기재사항에 오기 또는 누락이 없는가 확인한다.  
예) 2란 영업형태에서 도매업 또는 일반소매업인 경우는 6란 월간 판매액 기입시 합계만 기입하고, 백화점 또는 슈퍼마켓인 경우는 6란 월간 판매액 기입시 ①의류, ②식료, ③기타로 나누어 기재한 후 합계를 기입한다.
- 마. 휴·폐업으로 인하여 그 달에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월간판매액, 월간 구입액 및 월말재고액은 보합금액으로 기재하고 월간영업일수, 종사자수는 전월과 동일하게 기재한다.
- 바. 제출된 조사표 숫자와 부여된 업종별(도매, 일반소매, 백화점, 슈퍼마켓) 사업체 숫자는 일치되어야 한다.

### 2. 실사시 유의사항

- 가. 조사담당자는 대상사업체의 사업주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사업체에 대한 특성 및 동향 등을 항시 파악하고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 나. 조사담당자는 매월 1~15일 사이에 담당 조사구내를 순회하며 대상사업체를 직접 방문 조사하며, 응답자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표를 작성하지 못한 때에는 재방문하여 기일내에 작성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전화로 조사하는 경우 사전에 사업주의 양해를 구하도록 한다.

다. 조사담당자는 별도 배부한 조사기록부에 매월 조사를 위해 참고자료가 될 사항을 기록하여 조사의 누락, 오기 및 합계착오 등 조사표상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고 조사표 내용 검토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 부록5 조사기록부 작성 및 활용방법 참조 P51 >

라. 담당조사구내에서 대상사업체에 사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종사자수, 매장면적 등의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조사표의 증감내용 및 기타 변동사항란에 명시하고 사업체변동 보고서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하며,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계속 조사하여야 한다.

마. 유고사업체 관리

폐업, 타 시(군)·시(도) 이전, 이전처 불명, 장기휴업, 응답불응, 전업 업체에 대하여는 N 2. 사업체 관리요령 (P25)에 따른다.

### Ⅲ . 조사표 기입 방법

#### 1. 연 월

조사대상월의 연도 및 월을 기입한다.

#### 2. 사무소부호 및 사업체번호, 조사담당ID번호, 유고코드

- 사무소부호는 사업체가 위치한 지역을 알려주는 고유번호로서 < 부록 6 사무소, 출장소 및 복무위탁지별 사무소부호 및 USER-ID>를 참조한다.
- 사무소부호는 변동될 수 있으나 사업체번호와 업종분류부호는 고정되어 있어 변동될 수 없다. 단, 업종분류가 변경될 경우는 『P24 라(2)』참조
- 조사담당ID번호는 사무소별로 업무분장시 부여받은 조사담당자 고유번호이다.
- 유고코드는 사업체의 변동발생시 작성하는 부호로서 변동내용에 대한 부호는 < 부록 4 사업체 변동보고서 작성요령 >을 참조한다.

#### 3. 사업체명

사업체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상호명을 기입한다.

#### 4. 전화번호

조사 대상사업체의 전화번호를 기입한다.

#### 5. 소재지

- 사업체가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를 번지, 호수, 통반까지 상세히 기입하며 사업체가 빌딩, 시장, 상가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는 그 명칭과 점포의 층별, 동별, 호수까지 기입한다.
-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등과 같이 여러개의 지점을 갖고 있는 경우 조사자료가 분사에서 나오더라도 소재지는 각 지점이 위치한 장소를 기준으로 기입한다.

## 6. 조사표 작성 근거

- 조사된 내용이 장부에 의해서 작성될 때는 "①장부란"에, 기억에 의할때는 "②기억란"에 ○표 한다.

<예시>

1. 사무소부호 및 사업체번호						조 사 담 당 ID 번 호		유 고 코 드	
A	0	-	1	2	3	4	A 0 0 0 1		0 8 (폐업)
사업체명		홍길동상사(주)			대 표 자		홍 길 동		조사표 작성 근거
소 재 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15						①장부 ②기억	

- 회계장부가 아니고 금전출납형식으로 기재된 장부라도 근거에 의한 것은 "①장부"에 ○표 한다.

## 7. 영업형태

해당 사업체의 영업형태에 따라 도매업, 소매업, 백화점, 슈퍼마켓 번호에 ○표하고 도매업은 A(전수층)와 B(표본층)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8. 월간 영업일수

조사 해당월 중 실제로 영업한 일수를 기입한다. 하루 중 일부 시간에만 영업하였다 하더라도 일수에 포함한다. 사업체의 돌발 사정으로 영업일수가 적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2. 영           업           형           태				3. 월간영업일수	
①도매 A, B	②일반소매업	③백화점	④슈퍼마켓	2 7 일	

## 9. 매장면적

사업체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말한다.

따라서 자기 소유의 매장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임대한 매장부분은 제외되며, 주거 병용의 경우 순수한 사업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만 조사되어야 한다.

예시)

- 주유소는 저장탱크의 면적도 포함한다.
- 소매점의 경우 가게앞 인도를 불법 점유하여 사용하더라도 매장면적으로 보아야 한다.
- 시장내 도매업체의 경우 공터 또는 통로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여 사용하고 있으면 매장면적으로 본다.
- 백화점 매장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

①계단(자동식계단 포함) ②승강기 ③연결통로(구름다리, 지하도, 현관출입 통로) ④문화행사장 ⑤관리사무실 ⑥소비자보호시설(무료로 제공되는 휴게시설) ⑦공중전화실 ⑧화장실 ⑨기계실 ⑩옥내주차장 ⑪상품반입장 및 창고 ⑫기타 소비자의 편익을 위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시설

## 10. 주요 취급 상품

조사대상 사업체에서 취급하는 판매상품 중 판매비중이 가장 높은 상품명을 하나만 기입하며, 업종분류표에 의거 분류부호를 기입한다.

상품명 기입시 구멍가게와 연쇄점의 경우는 식료잡화나 일용잡화로 나누어 기입하고, 영업형태에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으로 분류된 사업체는 슈퍼마켓 또는 백화점으로 기입한다.

- 위에서 제시한(식료, 일용)잡화, 백화점, 슈퍼마켓을 제외한 전 사업체는 취급상품명을 반드시 품목으로 적어야 한다.

단, 주요 취급상품이 변경되어 업종분류부호가 변경될 경우에는 『Ⅳ 2. 사업체 관리요령』에 따른다. (P25)

<예시>

4. 매 장 면 적			5. 주 요 취 급 상 품				
1 2 3 m <sup>2</sup>			상 품 명			업종분류번호	
			배 추			6 1 1 4 0	

- 주의사항 : 사업체의 주요취급상품이 변경되어 업종분류부호가 불일치할 경우는 반드시 유통통계과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11. 월간 판매액

월간 상품판매액은 조사대상월의 1개월간에 판매한 전 상품의 판매액을 기입하며 이는 현금(신용카드)판매, 외상판매, 월부판매의 총액이다.  
 도매업체 및 일반소매업체는 월간 총판매액을 합계란에 기입하며, 종합소매업(백화점, 슈퍼마켓)의 경우는 의류, 식료, 기타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판매액으로 계상한다.

- 가. 판매액은 주요취급상품분의 판매액 뿐만아니라 기타 취급상품의 판매액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수입금액도 포함한다.
- 나. 상품의 대금 전액을 받았을 경우에는 상품 인도와는 관계없이 매매가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판매액으로 계상한다.
- 다.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는 상품 인도시 판매된 것으로 보고 대금의 전액을 판매액으로 계상한다.
- 라. 예약판매의 경우도 상품을 인도했을 때 판매액으로 계상한다.
- 마. 자가소비한 상품은 소비한 당시의 매출시가로 계산하여 판매액에 계상한다.
- 바. 출장판매, 통신판매 등에 의한 경우에는 상품 인도시 판매된 것으로 보고, 해당월의 판매액으로 계상한다.
- 사. 상품권의 발행은 상품판매에 계상하지 않지만 상품을 인도하였을 때 그 금액만큼 판매액으로 계상한다.

아.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상품판매액에 포함한다.

- 일부 도매업체에서는 판매액과 부가가치세를 장부 기재시 따로 기재하고 있으나 상품 판매시 포함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판매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조사한다.

(도소매업 동태조사는 도매업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소매업도 조사하므로 일관성이 있어야 함)

자. 타인에게 판매를 위탁한 경우는 수탁자로부터 대금을 받았거나 매출계산서를 받았을 때 판매액으로 계상한다.

차. 종합소매업 중 백화점 및 슈퍼마켓의 경우는 판매금액을 의류, 식료, 기타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카. 상품이란 상인 또는 상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단체가 그 본래의 주요 업무로 판매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모든 물품이다. 그러나 상인이 수입을 얻기 위하여 매매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주된 영업목적이 아닌 경우(예: 임대료수입, 유가증권매매이익, 고정자산 처분이익 등)는 제외된다.

## 12. 월간구입액

조사해당월에 구입한 상품의 구입가격 및 구입 부대 비용을 포함하여 구입 원가로 조사 기입한다. 이때 외상으로 구입하였다더라도 상품이 도착하였으면 구입액으로 계상한다.

## 13. 월말재고액

가. 조사 해당월 말일 현재 사업체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품 총액을 기입한다. 재고상품액에 대한 평가는 매입원가로 해야하나, 사업체에서 재고액 평가방법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 다음의 경우는 상품재고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1) 영업장소, 하치장, 창고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상품
- (2) 상품을 위탁판매할 경우 수탁자로부터 상품대금이나 매출계산서가 도착하지 않은 적송품(위탁판매를 위하여 수탁처에 송부한 상품)의 금액
- (3) 상품인도 또는 대금을 입금하기 전의 예약판매나 주문상품
- (4) 조사대상기간 중 현금구입후 수송중에 있는 미착품
- (5) 기타 판매를 목적으로 한 저장품이나 부산물

나.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재고액 계상에서 제외한다.

- (1) 주된 영업품목이 아닌 비품, 사무용품, 포장재료 등의 재고액
- (2) 대금은 이미 받았으나 구매자에게 아직 인도되지 않고 보관중인 상품

다. 전월 재고액은 전월에 조사 보고된 내용에 따른다.

단, 사업체의 결산, 재고정리 등의 이유로 변경될 경우는 전월 재고는 수정 조사하여야 한다.

※ 영업이익 = 금월판매액 + 금월재고액 - 금월 구입액 - 전월말 재고액

- 영업이익에는 영업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순이익을 계산한뒤 판매액 및 기타항목조사에 대한 적격성을 파악하여 적자시 재고액, 구입액과 관련 착오여부를 재검토한다

- 사업체가 대체되었을 경우에는 전월기입란에 신규사업체의 전월분을 기입하지 않고 대체전 사업체의 전월실적을 기입한다.



## 14. 종사자수

조사해당월 말일 현재 조사대상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자를 아래 구분에 따라 기입한다. 단 휴가, 병가 및 출장중인 자 또는 타사업체로 파견된 자는 당해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자로 보며, 타사업체에서 파견되어 온 자는 제외한다.

### 가. 합계

합계란도 계·남·여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 나.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개인사업체의 소유자와 일정한 임금을 받지 않는 가족 종사자로서 경영(주당 18시간 이상 근무)에 참여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개인 사업체에는 반드시 1인 이상이 기입되어야 한다.

### 다. 상용종사자

1개월 이상의 고용기간을 정하여 고정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종사자를 말하며 아래의 경우도 여기에 포함한다.

(1) 법인 사업체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는 임원(사장, 이사, 감사 등)  
단, 주식회사의 주주같이 이익 배당금만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2) 사업주의 가족이라도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3) 일정급여 또는 판매수수료를 받는 외무사원, 판매원 및 배달원

(4) 임시 및 일일로 고용된 자라도 조사기준일 현재로 과거 2개월간 매월 20일 이상 고용된 자는 상용종사자에 포함한다.

라. 임시 및 일일종사자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급여를 받고 임시 및 일일로 고용된 자를 말한다.

<예시>

9. 종 사 자 수				
항목	성별	계		
		남	여	
① 자영업주및무급가족종사자		2	1	1
② 상 용 종 사 자		1	1	
③ 임 시 및 일 일 종 사 자				
④ 합	계	3	2	1

- 종사자수는 반드시 해당월 말일 기준으로 조사되어 고용구조 및 기타 통계 자료의 업종별 경제활동 인구와 비교가 되어야 한다.
- 종합소매업(백화점, 슈퍼)의 경우 제조업체에서 파견나온 판매사원은 종사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 용역회사 직원, 수수료 매장의 종사자 등)

## 15. 증감내용 및 기타변동사항

- 가. 판매액이 전월에 비하여 10%이상 증감이 있거나, 전년동월에 비하여 50%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다.
- 나. 구입액, 재고액 등이 크게 변동된 때에도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다.
- 다. 해당사업체의 기타 변동사항 등을 기입한다.

< 예시 >

- ① 잘못된 사례 : 다음과 같은 기입은 전반적인 증감사유가 될수 없으므로 실제 거래동향을 파악할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기입한다.

\* 증감내용 및 기타 변동사항

- 수요 증가로 판매 증가
- 거래처 주문 증가
- 판매 증가로 재고 감소

② 올바른 사례

\* 증감내용 및 기타 변동사항

- 윤달 결혼 기피로 혼수용품 판매 감소
- 바겐세일 실시로 판매 증가
- 난방용 유류 수요 증가

## <참 고> 업태별 유의사항

### (1) 도매업

- (가) 고 기 - 외국산 수입고기의 방출 유·무에 따라 판매수준이 변하며 대규모 축산회사의 비중이 크다.  
(우성유통, 축협 등)
- (나) 수산물 - 대상처에는 수산물 공판장이 포함되어 있고 도매단계와 중매인의 성격을 띠는 애매한 사업체도 포함되어 있어 이의 확인과 함께 명확한 거래단계를 실무자는 파악해 두어야 하며, 일부 원양업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동해, 서해, 남해, 원양으로 구분하여 어선의 귀향 여부에 따라 불특정하게 판매액의 증감이 있으므로 지역과 어종에 따른 판매 증감을 유의해야 한다.
- (다) 과실및채소 - 생산지의 기후 여건에 따라 생산량과 반입량의 차이가 있으므로 농수산물시장의 가격동향과 물량동향을 동시에 주의한다.
- (라) 음료품 - 알콜성음료는 명절이 낀 달에 특히 판매가 증가하는 데 이는 선물용으로 주로 사용되기 때문이며 비알콜성 음료의 경우 우유는 꾸준한 판매수준을 보이나, 청량음료는 하절기에 급격한 팽창을 보인다.

- (마) 의 복 - 춘하, 추동으로 구분하여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 판매가 증가한다. 의복 도매업의 경우 서울의 일부 시장(남대문, 평화시장)에 주로 집중되어 있으며, 장부처리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가세를 납부하는 달이나 계절이 바뀌는 달에 유의한다.
- (바) 직 물 - 하복지와 동복지를 취급하는 사업체가 명백히 구분되며 한 계 품 철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판매수준의 기복이 심하다.
- (사) 전 기 기 기 - 노사분규 및 수출에 대한 영향이 크며 계절에 관계없이 불 금 기 계 속 특 정 적 으 로 발 생 하 므 로 신 문 의 경 제 면 을 유 의 하 여 생 산, 운 수 장 비 출 하 에 대 한 기 본 개 념 을 갖 도 록 한 다.  
또한 상품분류안에 들어 있는 취급품목이 다양하므로 상품 하나하나에 대한 유통단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전기기기에는 가정용전자제품과 산업용전기제품으로 구성되며 산업용 전기제품의 경우 공장증축에 관계되는 설비(전동기, 케이블카 등)가 많으므로 설비 투자의 증가와 병행하는 수준을 보인다.  
가정용전자제품의 경우 소매업의 가정용기기 분류안에도 포함되어 있어 도매와 소매거래의 흐름을 함께 볼수 있다. 도매업인 경우에는 3대 가전사의 각 지방 영업소가 대상처로 선정되어 있고 소매업에서는 전자대리점(가전제품 대리점)이 선정되어 있다.  
가전제품의 경우 도매단계의 거래활동이 소매단계에서의 거래활동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증가, 감소에 대한 원인을 생각해 두어야 한다.

기계 의 경우는 산업용 공작기계, 사무자동화기기, 농기계 및 건설장비 등이 주종을 이루며 거래처 납품에 따른 판매 수준의 변동이 심하다.

금속 의 경우는 냉연강판, 압연박판, 중후판등 산업용 금속 판재 및 건축용 철근을 취급하는 곳이 많다.

- (아) 가 장 신 구 - 내구재의 소비방향에 초점을 맞춘다.  
운 동 용 품 소 득 증 대 가 이 루 어 질 수 록 고 급 품 에 대 한 수 요 가 늘 게 되 고 판 매 가 자 연 히 증 가 하 게 되 므 로 같 은 제 품 이 라 도 예 전 보 다 고 급 품 을 선 호 하 는 소 비 자 의 구 매 패 턴 도 살 펴 야 한 다.

## 2) 소매업

(가) 소매업의 등락율은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이므로 각 산업 분류와 지역별로 소비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소매업 중 종합소매(백화점, 슈퍼마켓)라는 세분류에는 백화점이 포함되어 있으며 판매액은 그 숫자의 증감에 영향이 크므로 신규사업체 증가에 신경을 써야 한다.

## ※ 참 고

### 1. 백화점의 상품매장 형태

백화점은 통상 지하에는 슈퍼, 지상에는 상품코너가 마련되어 있고 상품매장을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는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해 두고 있다.

- 임대매장 - 백화점측과 입주자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운영한다. 이때 상품의 구입, 판매, 재고 및 인원관리는 입주자측에서 한다. 주로 편의시설(실내수영장, 볼링장, 커피숍, 레저시설 등)인 경우가 많다.

- 분양매장 - 임대매장과 흡사하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인정한 경우이다. 이 경우도 주로 편의시설이 많다.
- 수 수 료 매 장 - 대부분의 백화점에서 가장 많이 운영하는 형태이다. 이는 임대, 분양과는 달리 상품의 판매와 인원관리는 백화점측에서 해주고 상품의 재고는 해당상품의 제조업체측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백화점에서는 상품판매액에서 일정율(통상 15~35%)의 수수료를 받는다. 수수료매장은 백화점측에서 직영매장으로 포함하여 매장면적을 계산한다.
- 슈 퍼 - 임대나 분양을 한 경우는 독립사업체로 간주하며 직영하는 경우 슈퍼 판매분을 백화점 판매액에 합산하고 식료란에 기재한다.

## 2. 슈퍼마켓의 형태

### ① GMS (General Merchandising Store)

대규모 양판점으로 번역한다.

영업형태는 소비자의 자기구매방식을 택하며, 점원이 손님에게 상품을 권유하지 않는다. 상품진열 또한 같은 종류의 상품을 치수에 따라 메이커 구분없이 진열한다. 백화점의 중간형태로 가고 있으며 중산층 밀집지역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한양유통 잠실점이 1호를 기록하고 있으며 도소매업 동태조사에서는 백화점으로 분류하고 있다.

### ② 슈퍼마켓 (Supermarket)

현재 시중에서 영업하고 있는 일반적 형태로 식료와 기타 공산품을 취급하며 자기가 구매하는 방식이다.

③ 편의점(CVS : Convenience Store)

슈퍼와 흡사하나 소비계층에 따라 다양한 매장규모를 유지한다. 단, 24시간 영업을 하며 시간단위별 변동가격제를 실시해야 하나 현재 국내에서는 단일가격제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 많다. 국제적 체인을 갖추고 있으며 국내에는 씨클케이(Circle K), 스파(Spar), 미니스톱(Mini stop), 웨미리 마트(Family Mart) 등 외국의 다양한 체인점들이 진출해 있다.

3. 백화점과 슈퍼마켓 비교

구 분	백 화 점	슈 퍼 마 켓
매장면적	- 3,000㎡이상	-서울 250㎡이상, 지방 165㎡이상
직 영 륜	- 50%이상(임대건물30%이상)	-100%
상품구성	- 의식주에 대한 다양한 상품구성	-식료품 위주(소비자의 식생활 재료 제공이 주기능)
대금지불	- 부문별 계산	-쇼핑 최종단계에서 일괄계산
판매방법	- 점원(판매사)의 도움	-자기구매방식



## N. 조사표 내용 검사 방법

### 1. 항목별 내용검사 지침

가. 사무소부호 및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 (1) 사무소부호 및 사업체번호, 사업체명의 기입여부를 확인하고 위의 사항이 착오 또는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체명부와 대조한 후 수정 기입한다.
- (2) 사업체번호는 항상 고유번호로 유지하여야 하며 폐업이 되어 대체했을 경우에도 기존 고유번호를 그대로 유지한다.

나. 영업형태

- (1) ①항 ~ ④항중 하나에 반드시 ○표되어 있어야 한다.
- (2) 도매는 A와 B로 구분하여 ○표되어야 한다.
- (3) 사업체번호는 업종별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영업형태와 사업체 항목의 일치 여부를 검토한다.

<참고>

업종	도매A (전수층)	도매B (표본층)	소매
사업체번호	0001 ~ 2,000	3,001 ~	5,001 ~

다. 매장면적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기입되었을 경우 사사오입해야 하며 0.5㎡미만인 경우도 1㎡로 간주한다.

예) 0.3㎡ = 1㎡, 30.6㎡ = 31㎡

라. 주요 취급상품

- (1) 상품명란에 반드시 한가지 이상의 상품이 기입되어야 한다.  
(단, 구멍가게인 경우 일용잡화나 식료잡화로 기입되어야 하고,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은 상품명란에 동일하게 백화점, 슈퍼마켓으로 기입한다)
- (2) 업종분류부호와 주요취급상품이 일치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사업체명부와 대조하여 착오가 없도록 한다. 단, 사업체의 취급상품이 변하여 불일치할 경우는 반드시 유통통계과와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마. 월간판매액

- (1) 도매 및 일반소매업체는 월간 총판매액을 합계란에 기재해야 한다
- (2) 백화점과 슈퍼마켓은 판매액을 의류, 식료,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합계란에는 의류, 식료, 기타의 판매액을 합한 금액을 기재한다.
- (3) 전월과 금월 판매액의 증감폭이 10%를 넘을 경우 그 이유를 비고란에 구체적으로 타당성있게 기재해야 한다.  
(※ 업태별 유의사항 참조 P18)
- (4) 사업체의 휴·폐업 등으로 그달에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보합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변동사항을 기입한다.

바. 월간구입액, 월말재고액

전월과 비교하여 20% 이상 증감이 있을 때는 반드시 비고란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타당성 있게 기입해야 한다.

사. 종사자수

- (1) 합계란과 내용이 일치되는가 확인한다.
- (2) 종사자수 합계는 반드시 1인 이상이어야 하며 기입이 누락되었을 때는 사업체명부를 대조하여 수정한다.

아. 증감내용 및 기타 변동사항

변동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전체업종의 경기동향 분석에 용이하도록 요약하여 기입한다.

## 2. 사업체관리 요령

### 가. 사업체관리 개요

조사대상 업체의 휴·폐업 및 이전 등 대상사업체 변동에 따른 이용자료의 결함을 제거하고 사업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나. 사업체관리 방법

#### (1) 유고사업체 발생시

(가) 사업체의 폐업, 전업, 장기휴업, 타 시도로의 이전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체 변동보고서』(P50)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대체가능 사업체를 모색한다. 이때, 해당월의 조사표는 유고코드란에 해당부호와 유고내용을 기입하고, 보합처리한다.

(나) 적절한 사업체가 발견된 때에도 『사업체 변동보고서』(P50)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중앙의 별도 지시가 없으면 대체 적정사업체로 승인된 것으로 보고 익월부터 정상 조사하여 조사표에 기입한다.

(다) 대체된 사업체를 조사표에 기입할 때에는 기존의 사업체번호를 부여한 후 대체 전사업체의 전월 판매액, 구입액, 재고액은 기 보고된 내용을 확정시킨 후 대체 후 사업체의 전월 실적을 조사하여 이후 금월 조사분을 기입한다. 이때 사업체명, 전화번호, 매장면적 등 관련항목도 반드시 수정한다. 특히 전산입력 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확인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 유고사업체 대체 요령

- ① 대체할 사업체의 업종(영업형태)과 업종분류는 같아야 하며 판매액, 종사자수, 매장면적등 사업체규모가 비슷하여야 한다.
- ② 수준비교는 판매액을 우선으로 비교하되 폐업예정 사업체의 판매액은 재고상품 매각, 구입액 감소등으로 폐업시까지 정상적인 영업을 기대할수 없기 때문에 폐업이전의 판매액수준과 비슷한 판매액을 기준으로 추정기입한다.
- ③ 주요 취급상품란은 동일 업종분류내에서 대체하되 가급적이면 취급상품(계절적요인이 같은 상품)이 같은 사업체로 대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취급상품 중 지역특성으로 동일상품을 취급하는 대상처를 찾기 어려우면 다른 상품을 취급하더라도 동일세세분류 업종에서 대체할 수 있다.

< 부록 1. 도소매업 동태조사의 업종별 조사범위 참조 P34 >

- ⑤ ( )월 판매액란은 유고사업체와 신규사업체의 같은 월의 판매액을 기재하며, 이때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유고사업체의 전월 판매액 수준과 비슷한 사업체로 대체하지 말고 유고사업체의 연평균 판매액을 고려하여 대체하여야 한다. 이때 특이사항은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 ⑥ 해당 조사구내에 상기 기준에 맞는 대체사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 지역(시)에서 사업체를 대체 조사토록하고 차기 업무분장시 조정한다.

《 유의 사항 》

상기 요령에 적합한 사업체를 발견시 유통통계과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 최종 대체 사업체를 확정 하여야 한다.

## 2. 사업체관리 요령

### 가. 사업체관리 개요

조사대상 업체의 휴·폐업 및 이전 등 대상사업체 변동에 따른 이용자료의 결함을 제거하고 사업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나. 사업체관리 방법

#### (1) 유고사업체 발생시

(가) 사업체의 폐업, 전업, 장기휴업, 타 시도로의 이전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체 변동보고서』(P50)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대체가능 사업체를 물색한다. 이때, 해당월의 조사표는 유고코드란에 해당부호와 유고내용을 기입하고, 보합처리한다.

(나) 적절한 사업체가 발견된 때에도 『사업체 변동보고서』(P50)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중앙의 별도 지시가 없으면 대체 적정사업체로 승인된 것으로 보고 익월부터 정상 조사하여 조사표에 기입한다.

(다) 대체된 사업체를 조사표에 기입할 때에는 기존의 사업체번호를 부여한 후 대체 전사업체의 전월 판매액, 구입액, 재고액은 기 보고된 내용을 확정시킨 후 대체 후 사업체의 전월 실적을 조사하여 이후 금월 조사분을 기입한다. 이때 사업체명, 전화번호, 매장면적 등 관련항목도 반드시 수정한다. 특히 전산입력 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확인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 유고사업체 대체 요령

- ① 대체할 사업체의 업종(영업형태)과 상품분류는 같아야 하며 판매액, 종사자수, 매장면적등 사업체규모가 비슷하여야 한다.
- ② 수준비교는 판매액을 우선으로 비교하되 폐업예정 사업체의 판매액은 재고상품 매각, 구입액 감소등으로 폐업시까지 정상적인 영업을 기대할수 없기 때문에 폐업이전의 판매액수준과 비슷한 판매액을 기준으로 추정기입한다.
- ③ 주요 취급상품란은 동일 업종분류내에서 대체하되 가급적이면 취급상품(계절적요인이 같은 상품)이 같은 사업체로 대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취급상품 중 지역특성으로 동일상품을 취급하는 대상처를 찾기 어려우면 다른 상품을 취급하더라도 동일세세분류 업종에서 대체할 수 있다.

< 부록 1. 도소매업 동태조사의 업종별 조사범위 참조 P34 >

- ⑤ ( )월 판매액란은 유고사업체와 신규사업체의 같은 월의 판매액을 기재하며, 이때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유고사업체의 전월 판매액 수준과 비슷한 사업체로 대체하지 말고 유고사업체의 연평균 판매액을 고려하여 대체하여야 한다. 이때 특이사항은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 ⑥ 해당 조사구내에 상기 기준에 맞는 대체사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 지역(시)에서 사업체를 대체 조사토록하고 차기 업무분장시 조정한다.

《 유의 사항 》

상기 요령에 적합한 사업체를 발견시 유통통계과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 최종 대체 사업체를 확정 하여야 한다.

(2) 단기휴업발생시

대상사업체가 내부수리, 화재등 특별한 사정으로 단기휴업했을 경우  
다음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가)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 판매액 등 조사사항을 월 평균  
영업일수로 환산하여 기입

(나) 휴업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 전월과 보합처리

(다) 휴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장기휴업으로 보고 유고사업체  
관리방법에 따른다.

(3) 기타사항 변동시

(가) 대상명칭

대상사업체가 명칭변경(사업체명, 대표자명, 전화, 주소 등)되었을  
때에는 『사업체 변동보고서』(P52)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온라인  
조사표를 수정하여 계속조사에 임한다.

(나) 동일 시내 이전

도매업 대상사업체가 동일 시내의 타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변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계속 조사하며, 소매업체가 타조사구로  
이전하였을 경우 유고사업체 관리요령에 따른다.

(다) 타 시로 이전

도매업체는 추적하여 계속 조사하고, 기타의 경우는 유고사업체  
관리요령에 따른다.

#### (4) 사업체수

각 시의 업종별 사업체수는 변동되어서는 안되며 (단, 전수조사업종은 예외) 유고사업체 발생시는 즉시 보완하여 판매액 등 실적의 급격한 감소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한다. 단, 백화점은 전수조사이므로 대상사업체가 유고되었을 때 대체하지 않으며 신규 백화점의 발생시에는 개점과 동시에 대상사업체에 포함하여 조사해야 한다. 특히 신규 백화점이 대상처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부분 개설전 대대적인 광고활동을 펼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규업체를 적시에 포착함으로써 판매 동향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한다.



## V. 조사표 전송 방법

### 1. 조사표 전송 전 점검사항

접수된 조사표가 질의조회나 재조사 지시를 받지 않도록 반드시 다음 내용을 검토한 후 전송하여야 한다.

- (1) 조사기준월(년월)과 사무소부호 및 사업체번호 등의 기입 누락여부
- (2) 주요 취급상품명 및 분류번호가 업종분류표에 지정된 분류번호와 일치되었는지의 여부
- (3) 전월분 월간판매액 및 월말재고액이 오기되었는지의 여부
- (4) 조사된 수치의 증감이 전월과 비교하여 심할 경우 증감률 및 구체적인 증감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여 증감내용 및 기타 변동란에 기입되어 있는지의 여부

### 2. 조사표 전송

가. 미기장업체는 17일까지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회계장부에 의거 조사표가 작성되는 사업체는 15일까지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나, 전송기일 전이라도 조사가 완료된 조사표는 수시로 전산 입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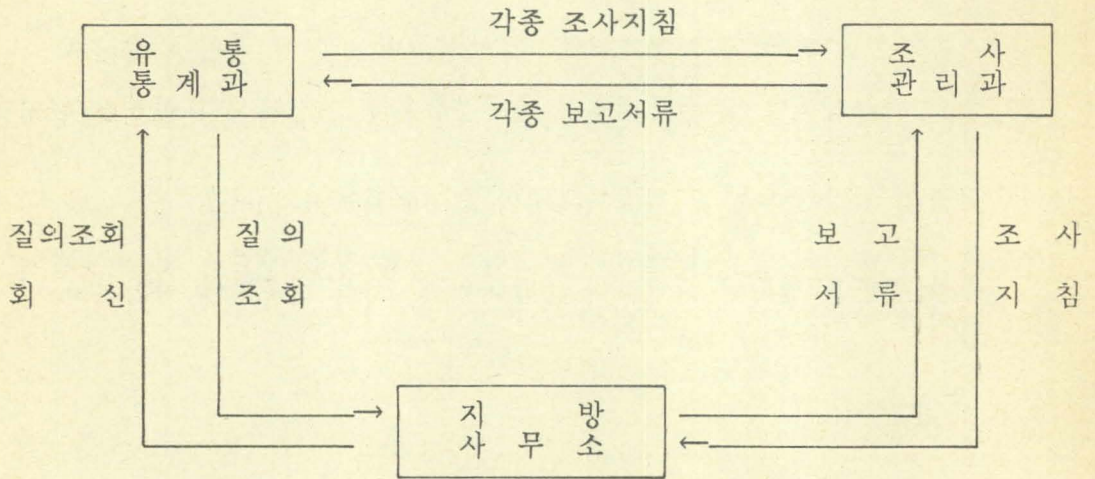
전산입력된 조사표중 내검이 완료된 사업체는 19일까지 온라인 전산망을 통하여 중앙에 전송한다.

나. 특히 전송전에 입력된 자료를 조사표 내용과 재확인하여 잘못된 자료를 전송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다. 조사과장은 특별한 사유로 인한 지연사업체 명단 및 잠정치 조사 대상 사업체에 대해 조사표 작성 완료일을 파악하여 기일내 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CRT로 조사표가 제출되고 있으므로 해당 조사표와 CRT에 입력된 내용은 동일해야 한다.

간혹 대상처 변경시나 주소, 상호명 등 변동사업체 발생시 항목수정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CRT 입력자는 반드시 확인하여 전송해야 한다.

다. 보고체계도



新·舊業種分類 比較表

구분류 (1985년 기준)	신분류 (1990년 기준)	비 고
6 도 · 소 매 업	6 도 · 소 매 업	
61 도 매 업	61 도 매 업	
611 농수산물및 음식료품 6111 곡 물 6112 고 목기물 6113 수 산기물 6114 과 실 및 채소 6115 음 료품 6116 기 타 식 료 품	611 농수산물및 음식료품 6110 농 수 산 6111 곡 물 6112 고 목기물 6113 수 산기물 6114 과 실 및 채소 6115 음 료품 6116 식 료 품 및 기타	* 분류 6110 추가 - 지수분석시 농수산물, 음식료품, 식료품으로 분석하기 위함  - 6110=6111+6112+6113+6114
612 섬 유 및 의 류 6121 사 와 의 연 6122 직 물 및 직 물 제 6123 의 의 복 6124 신 발 및 가 방	612 섬 유 및 의 류 6121 사 와 의 연 6122 직 물 및 직 물 제 6123 의 의 복 6124 신 발 및 가 방	
613 전 기 기 기 6131 전 기 기 기	613 전 기 기 기 6131 전 기 기 기	
614 화합물, 석유석탄제품 6141 의 약 품 6142 화 장 품 6143 화 합 품	614 화합물, 석유석탄제품 6141 의 약 품 6142 화 장 품 6143 화 합 품	
615 기 계 6151 기 계	615 기 계 6151 일반 목적용 기계 6152 특수 목적용 기계 6153 사무 회계용 기계 6154 정밀 기계 및 기타	* 기계의 가중치가 크게 증가하여 기계업종의 분류 필요
616 철 물 및 가정용품 6161 철물 및 가정용품	616 철 물 및 가정용품 6161 철물 및 가정용품	
617 건 축 재 료 6171 건 축 재 료	617 건 축 재 료 6171 건 축 재 료	
618 금 속 6181 금 속	618 금 속 6181 금 속	

구분류 (1985년 기준)	신분류 (1990년 기준)	비 고
619 기 타 도 매 업 6191 운 수 장 비	619 운 수 장 비 6191 자 동 차 6192 자 동 차 부 품 이 료 자 동 차	* 6191 운수장비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세분류→소분류로 분류단계 조정
6192 종이인쇄문구용품 6193 가 구 타 6194 기 타	610 기 타 도 매 업 6101 종이인쇄문구용품 6102 가 구 타 6103 기 타	

※ 소분류 9 → 10 (1개 증가), 세분류 22 → 27로 조정 (5개 증가)

구분류 (1985년 기준)	신분류 (1990년 기준)	비 고
62 소 매 업	62 소 매 업	
640 일 반 소 매	640 일 반 소 매	
621 농수산물및음식료품 6211 곡 물 6212 고 기 6213 수 산 물 6214 과 실 및 채 소 6215 음식료품종합소매	621 농수산물및음식료품 6210 농 수 산 6211 곡 물 6212 고 기 6213 수 산 물 6214 과 실 및 채 소 6215 음식료품종합소매	* 분류 6210 추가 - 지수분석시 농수산물, 음식료품 종합소매로 분리 분석용 - 6210=6211+6212+6213+6214 * 음식료품 제조소매업 (62118) 제외
622 섬 유 및 의 류 6221 의 복 6222 신 발 및 가 방 6223 직물 및 직물제품	622 섬 유 및 의 류 6221 의 복 6222 신 발 및 가 방 6223 직물 및 직물제품	
623 가 구 및 가 정 용 기 기 6231 가 구 6232 가 정 용 기 기	623 가 구 및 가 정 용 기 기 6231 가 구 6232 가 정 용 기 기	
624 약 및 화 장 품 6241 의 약 품 6242 화 장 품	624 약 및 화 장 품 6241 의 약 품 6242 화 장 품	
625 장 신 구 및 시 계 6251 장신구 및 시계	625 장 신 구 및 시 계 6251 장신구 및 시계	

구분류 (1985년 기준)	신분류 (1990년 기준)	비 고
626 종이, 인쇄, 문구용품 6261 종이인쇄문구용품	626 종이, 인쇄, 문구용품 6261 종이인쇄문구용품	
627 개인운수장비주유소 6271 개인 운수 장비 6272 주 유 소	627 개인운수장비주유소 6271 개인 운수 장비 6272 주 유 소	
628 가 정 용 연 료 6281 가 정 용 연 료	628 가 정 용 연 료 6281 가 정 용 연 료	
629 기 타 일 반 소 매 6291 철물전기기재가정용품 6292 안경사진광학용품 6293 운동용구밧장난감 6294 기	629 기 타 일 반 소 매 6291 철물전기기재가정용품 6292 안경사진광학용품 6293 운동용구밧장난감 6294 기	
620 종 합 소 매 6201 백 화 점 컷 6202 슈 퍼 마 컷	620 종 합 소 매 6201 백 화 점 컷 6202 슈 퍼 마 컷	

※ 세분류 23 → 24로 조정 (1개 증가)

<부록 1> 도·소매업의 업종별 조사범위

분 류		내 용
분류번호	업 종	
61	도 매	
611	농 수 산 물 및 음 식 료 품	
6110	농 수 산 물	
61110	곡 물	양곡, 제분제품, 사료
61120	고 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61130	수 산 물	선어, 건어, 염장어, 해조류
61140	과 실 및 채 소	사과, 복숭아, 밤, 대추, 바나나, 무우, 배추, 감자, 고추, 마늘, 수박, 가지 등
61150	음 료 품	
61151	비 알 콜 성 음 료	우유, 야쿠르트, 사이다, 스포츠 음료등
61152	알 콜 성 음 료	맥주, 소주 등
61160	식 료 품 및 기 타	빵및 과자류, 통조림등 가공및 조제식품, 담배, 꿀등 농수산물및 음식료품 중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업종
612	섬유 및 의류	
61210	사 및 연 사	천연및 화학섬유의 사, 연사
61220	직 물 및 직 물 제 품	면직물, 혼방직물, 견직물, 양장지, 양복지, 커튼지, 타올, 카페트, 이불, 수예품, 담요 등
61230	의 복	
61231	외 의	남녀외의
61232	내 의	남녀내의
61233	기 타	손수건, 장갑, 모자, 스카프, 의복용 악세서리, 단추, 파스너, 가발, 버클, 각반 등 의복부착물
61240	신 발 , 가 방	각종 재료의 신발, 가방
613	전 기 기 기	
6131	전 기 기 기	
61311	가 정 용 전 기 기 기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라디오, 전기난로 등
61312	전 기 기 재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 정류기, 전기로, 축전지, 전기 송배선장치, 전기용 선및 케이블, 전구, 라디오및 방송장치, 경보 신호장치, 전화용 선및 케이블, 유·무선 통신장비등 전자부품, 육내 배선장치, 전기측정기기, 반도체 등

분 류		내 용
분류번호	업 종	
614	화합물및 석유 석탄제품	
61410 61420	의 약 품 화 장 품	각종 양약, 각종 한약 향수, 크림, 화운데이션, 로우션, 치약, 샴푸, 머리 염색약, 머리기름, 화장비누, 약용비누, 세탁비누, 중성세제 등
6143	화합물석유석탄 제품	
61431	화 학 제 품	질소, 인산, 칼리질비료, 혼합화학 및 복합비료,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성장조절제, 소독제등, 유·수성도료, 바니쉬, 라카, 형광도료, 옷칠도료 등 관련제품, 유·무기공업 화합물및 관련제품인 합성수지, 인조왁스, 폭발물, 인쇄잉크, 방향유, 레지노이드, 접착제, 필름, 사진감광재료 등
61432	석유 석탄제품	석유, 등유, 경유, 휘발유, 방카C유, 연탄 등
615	기 계	
61510	일반목적용기계	펌프및 압축기, 밸브, 베어링및 전동요소, 산업용 운반기계, 산업용냉장및 냉동장비, 에어컨, 차량 공기조절기, 저울, 정수기, 공기청정기, 소화기, 자동판매기
61520	특수목적용기계	농업용트랙터, 경운기, 탈곡기, 낙농장비, 부화기, 농산물 건조기, 정원용기계등 농업용 기계장비, 불도저, 포크레인, 그레이더, 스크레퍼, 쇼벨, 콘크리트믹서, 도로포장기, 드릴, 파쇄기, 인양기, 기중기, 착암기등 건설 및 광업용기계·장비, 선반, 밀링기, 형삭기, 드릴링기, 용접기, 프레스 기, 압연기등 금속절삭 및 성형기계와 목공기계 공업용재봉기, 염색기, 연사기, 면직기, 견직기, 편직기 등 섬유기계, 인쇄기계
61530 61540	사무회계용기계 정밀기기및기타	컴퓨터및 주변기, 타자기, 계산기, 복사기, 팩시밀리 의료용기구, 안경, 측량기구, 물리실험기구, 광학 기구, 산업용로버트, 제도기
6161	철 물 및 가 정 용 품	
61611	철물및수공구	볼트, 너트및 와셔, 스크류및 도끼, 줄삽, 호미, 전지용 가위 등
61612	가정 용품	보일러, 연소기, 난로, 난방기구, 방열기 등 비전기식 난방장치 밥그릇, 주발, 후라이팬, 유리, 토기 등 식탁 및 주방용품, 재봉틀, 이·미용기구, 조리대, 개수대, 가스대, 각종악기 등

분 류		내 용
분류번호	업 종	
61710	건 축 재 료	각재, 판재, 소할재, 재생목재, 석회 및 각종 시멘트, 적벽돌및 시멘트벽돌, 기와, 블럭, 쇠석, 자갈, 모래 등 골재 유리섬유를 포함하여 판유리, 건축용유리제품 등 석재, 대리석, 연관및 위생용기, 각종 플라스틱 건축자재, 정화조, 방열및 단열재 등
61810	금 속	각종 크기의 건물및구조물 보강 철근, 고압도관을 포함한 상하수용철관, 파이프등 각종 철및비철금속판재, 금속선괴, 철및비철금속선재, 로프, 철선울타리제품, 콘크리트용 철망등의 건축용 철선광산을 떠나 별도로 운영되는 광업체 판매장 및 하치장 일차금속 및 반성재의 철강, 스위트바, 용접봉 등
619	운 수 장 비	
61910	자 동 차	각종 자동차
61920	자동차 부품및 이륜자동차	자동차부품, 차량 타이어및 튜브, 손수레, 동물견인차, 해상·항공 운수장비, 자전거, 모터사이클 스쿠터 및 이들의 부속품과 악세서리 및 타이어
610	기타 도매업	
6101	종이, 인쇄물 및 문구용품	
61011	서 문 종	각종서적, 간행물, 팜프렛, 신문 만년필, 연필, 볼펜, 베틀, 잉크 비닐및 관련제품, 신문및 필기용 원지, 판지, 플라스틱 필름과 종이및 비닐제의 백및 상자, 벽지, 장판지, 포장지, 화장지 등
61012		
61013		
61020	가 구	각종 재료의 가정, 사무실 및 전문용 가구, 매트리스, 침대스프링 등
61030	기 타	운동경기 오락게임 용구및 용품 등 스포츠 레저 용품, 시계및 귀금속 제품, 인형·장남감및 모조 장신품, 장식용 공예품, 폐품수집 및 판매업, 로프, 연승, 어망, 이화학용품, 안장 및 마구류, 직연용품, 트로피, 족제품, 축음기판및 녹음테이프, 걸레, 비, 솔, 빗, 바늘 등



분 류		내 용
분류번호	업 종	
62	소 매	
640	일 반 소 매	
621	농 수산물 및 식품	
6210	농 수 산 물	
62110	곡 물	양곡, 제분제품, 사료 등
62120	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62130	수 산 물	선어, 건어, 염장어 등 해조류
62140	과실및채소	사과, 복숭아, 귤, 밤, 대추, 바나나 등 과실, 무우, 배추, 감자, 고추, 수박, 가지 등 채소
62160	식 료 품 종합소매업	알콜성 및 비알콜성음료, 통조림, 과자, 조미료, 설탕, 국수, 달걀 등 각종음식료품을 종합적으로 판매하여 주된 품목을 파악할 수 없는 식료잡화, 담배 소매업, 물, 얼음 등
622	섬유및의류	
62210	의 복	외의류, 내의류, 작업복 등
62220	신발, 가방	모자, 장갑, 손수건, 넥타이, 의복용 악세사리, 핀, 단추, 편물사, 재봉사, 파스너, 너클, 솔, 섬유원료
62230	직물 및 직물제품	각종 재료의 신발 및 각반, 각종 재료의 가방 양복지, 양장지, 한복지 등 각종 옷감 커튼, 담요, 카페트, 융단, 자리, 린넨스립카바, 책상보, 이불, 요, 배개, 수예품, 직물포대 등
623	가 구 및 가정용 기기	
62310	가정용 구	책상, 걸상, 옷장, 캐비닛, 침대, 응접세트 등
62320	가정용기기	냉장고, 세탁기, 룸쿨러, 이동식난방기구, 선풍기, 재봉틀, 진공소제기, 풍로, 열판, 토스터, 오븐, 믹서, 오디오, 전축, 전화기, VTR, 퍼스날컴퓨터, 피아노, 각종악기 등
624	약 및 화장품	
62410	의 약 품	각종 의약품 및 한약, 가정용 살충제, 살균제, 소독제 등 화공약품
62420	화 장 품	향수, 크림, 로션, 약용비누, 샴푸 등
62510	장신구및 시계	금, 백금, 귀석 및 준귀석의 장신구, 시계류

분 류		내 용
분류번호	업 종	
6261	종이, 인쇄물 및 문구 용품	장판지, 벽지, 창호지, 특수제지 등 지물류, 비닐 장판, 비닐벽지 등 참고서, 교과서, 신문, 정기간행물 등 각종 인쇄 및 필기용지, 노트, 일기장, 카렌다, 연 하장, 연필, 만년필, 볼펜, 물감, 크레파스, 붓 등
62611	지 물	
62612	서 문	
62613	적 구	
627	개인운수장비 및 주유소	승용차, 모터사이클, 스쿠터, 자전거 및 그 부품, 자동차 부품소매업 차량용 각종 유류, 가스 등
62710	개인운수장비	
62720	주 유 소	
62810	가정용 연료	연탄, 석유, 가스, 장작, 숯, 알콜 등
629	기타일반소매	못, 너트, 볼트, 스크류, 와사등 철물, 삽, 괭이, 호미, 해머, 수공구, 끌, 대패, 톱, 뿔지, 드라 이버, 전지가위, 난방용 보일러, 장치식난로 등 옥내배선, 전구, 플러그, 퓨즈, 스위치, 조명 장치 등 각종 조명 전기장치 도기, 자기, 유리, 스텐레스 스틸, 양은 등 각종 재료의 접시, 주발, 냄비, 후라이팬, 주전자, 바켓스 등 가정용 식기와 도마
6291	철물, 전기기재	
62911	가 정 용 품 물	
62912	전 기 기 재	
62913	가 정 용 품	
6292	안경, 사진 및 광학용품	
62921	안 경	콘택트렌즈, 선글라스 등 각종 안경 사진필름, 사진용화학물, 사진기, 영사기, VTR카메라, 압실장비, 쌍안경, 현미경등 광학용품과 사진용품
62922	사 진 및 광학용품	
6293	운동용구 및 장난감	등산장비, 낚시장비, 동계스포츠장비, 골프장비, 코트 및 필드 게임장비, 테이블, 게임용장비, 수렵용 장비 수중경기용 장비, 바둑, 장기등 오락용 기계장비 각종 재료의 인형 및 장난감
62931	운 동 용 구	
62932	인 형 및 장난감	
62940	기 타	음반 및 테이프, 관광민예품 및 선물용품, 골동품 및 미술용품, 건설재료, 위생 및 관련비품, 우산 및 양산, 각연용품, 보청기, 요법기기, 이·미용기구 등

분 류		내 용
분류번호	업 종	
620	총 합 소 매 업	<p>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시설을 갖추어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백화점은 여러 개의 매장으로 구획되며 각 매장마다 전용 판매원이 고정 배치되며 직접 매매 및 계산활동이 이루어진다. 매장면적 3,000㎡이상으로 직영면적 50%이상 (임차 사용의 경우 30% 이상 직영)</p>
62010	백 화 점	
62020	슈퍼마켓	<p>단일경영체제하에 식료품을 비롯하여 각종 상품을 매장 내에 진열하여 최종소비자가 자기 구매방식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계산할 수 있는 대형 종합소매점인 사업체를 말한다. 단, 매장면적 서울 250㎡이상, 지방 165㎡이상</p>

<부록 2> 산업분류와 도소매업 업종분류 연관표

산 업 분 류		도 · 소매 업종분류		비 고
분 류	업 종	분 류	업 종	
50	자동차 판매, 수리 및 차량 연료 소매			
501	자동차 판매			
5011 50110	자동차 도매 자동차	61910	자동차 및 부품	
5012 50121 50122	자동차 소매 자동차 신제품 중고 자동차	62710 62710	개인운수장비 개인운수장비	
503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 판매			
5030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 판매			
50301	자동차타이어 및 부속품	61920 62710	자동차 및 부품 개인운수장비	도매업인 소매업인
50302	자동차내장품	61920 62710	자동차 및 부품 개인운수장비	도매업인 소매업인
50303	자동차신부품	61920 62710	자동차 및 부품 개인운수장비	도매업인 소매업인
50304	자동차중고부품	61920 62710	자동차 및 부품 개인운수장비	도매업인 소매업인
504	이륜자동차 판매 및 수리			
5040	이륜자동차 판매 및 수리			
50401	이륜 자동차 및 부품판매	61920 62710	자동차 및 부품 개인운수장비	도매업인 소매업인
505	차량용 연료 소매			
5050 50501 50502	차량용 연료 소매 주유소운영업 차량용가스충전	62720 62720	주유소 주유소	

산업분류		도·소매업종분류		비고	
분류	업종	분류	업종		
51	도매				
512	농축산물, 식품 및 담배				
5121 51211	산업용 농축산물 곡물 및 종자	61110 61160	곡물 기타식품	취급상품이 '곡물' 취급상품이 '종자'	
51212	사료	61110	곡물		
51213	화초 및 산물	61160	기타식품		
51214	산동	61160	기타식품		
51219	산기	61160	기타식품		
5122	음식료품 및 담배				
51221	과실 및 채소	61140	과실 및 채소		
51222	고기	61120	고기		
51223	수산물	61130	수산물		
51224	설탕, 빵, 과자	61160	기타식품		
51225	알콜음료	61152	알콜성음료		
51226	비알콜음료	61151	비알콜성음료		
51227	조미, 향신료	61160	기타식품		
51229	기타	61160	기타식품		
513	가정용품				
5131	가정용 섬유제품, 신발				'사 및 연사' '직물 및 직물제품'
51311	의복 및 가정용 직물	61210	사 및 연사		
51312	의복	61220	직물 및 직물제품		
51313	의복	61231	의의		
51314	의복	61232	내의		
51315	신발	61240	신발·가방		
51319	의복	61231	외의		
51319	의복	61233	기타 의복		
5132	가정용 기기, 가구				
51321	및 유사용 가구	61020	가구	가정용 전기기구 가정용품	
51322	가정용 전기기구	61311	가정용 전기기구		
51323	가정용 철물, 식탁, 주방기기	61612	가정용품		

산업분류		도·소매업종분류		비고
분류	업종	분류	업종	
51324	조명기구 및 장치 악기 및 레코드 벽지, 양탄자 및 유사마루덮개 가정용요업 및 목재제품타	61311	가정용전기기구	'양탄자', '벽지, 양탄자', '가정용요업제품', '장식용공예품'
51325		61612	가정용품	
51326		61220	직물 및 직물제품	
51327		61013	종이	
51329		61612 61030 61612	가정용품 기타도매 가정용품	
5133	의약품, 의료용품 및 화장품 의약품 의 의료용품 화장품 비누 및 세정제	61410 61420 61420	의약품	
51331			의약품	
51332			화장품	
51333			화장품	
5134	종이, 인쇄물 및 문구 용품 종이 및 종이제품 서적 및 기타 인쇄 문구 용품	61013	종이	
51341		61011	서적 및 기타 인쇄	
51342		61012	문구	
51343				
5139	기타 화학용품 사진 및 광학용품 장난감 오락용품 및 모조장식품 시계 귀금속제품 운동 및 경기용품 가방 및 여행용품 (의복제외) 자전거 부품 및 자전거 부품 기타	61431	화학제품	
51391		61030	기타도매	
51392				
51393		61030	기타도매	
51394		61030	기타도매	
51395		61240	신발·가방	
51396		61920	자동차 부품 및	
51399		61030	이륜자동차 기타도매	
514		산업용 중간재료 및 재생재료		
5141	연료 및 관련제품 고체 연료 및 관련 제품 액체 연료 및 관련 제품 기체 연료 및 관련 제품	61432	석유석탄제품	
51411		61432	석유석탄제품	
51412		61432	석유석탄제품	
51413		61432	석유석탄제품	

산업분류		도·소매업종분류		비고
분류	업종	분류	업종	
5142	금속광물 및 1차 금속제품			
51421	철	61810	금속	
51422	금속	61810	금속	
51423	금속	61810	금속	
51424	금속	61810	금속	
51425	금속	61810	금속	
51429	기타	61810	금속	
5143	건축재료, 철물 및 난방장치			
51431	목재	61710	건축재료	
51432	석회 및 시멘트	61710	건축재료	
51433	고령회	61710	건축재료	
51434	유도	61710	건축재료	
51435	일반철물, 수공구	61431	화학제품	
51436	난방장치	61611	철물 및 수공구	'철물 및 수공구'
		61612	가정용품	
51437	조립식건축물 및 구조재	61710	건축재료	'난방장치'
51438	기와, 벽돌, 블록	61710	건축재료	
51439	기타	61710	건축재료	
5149	기타 산업용 중간재 및 재생재			
51491	산업용 기초물	61431	화학제품	
51492	화학합성 안료, 안료	61431	화학제품	
51493	관련 제품	61431	화학제품	
51494	비료	61431	화학제품	
51495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61431	화학제품	
51496	방직용 섬유, 물	61210	사 및 연사	'사 및 연사'
	사 및 직물	61220	직물 및 직물제품	'직물 및 직물제품'
51497	재생재료수	61030	기타도매	
51499	기타	61431	화학제품	
515	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 용품			
5150	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 제품			

산업분류		도·소매업종분류		비고
분류	업종	분류	업종	
51501	일반목적용기계	61510	일반목적용기계	수송장비, 및 관련장치
51502	농업용기계	61520	특수목적용기계	
51503	건설광업용기계	61520	특수목적용기계	
51504	금속공작기계	61520	특수목적용기계	
51505	사무용기계	61530	사무회계용기계	
51506	통신장비	61312	전기기자재	
51507	전기장비	61312	전기기자재	
51508	의료, 관련기기	61540	정밀기기 및 기타	
51509	기타	61520	특수목적용기계	
		61920	자동차 및 부품	
519	기타도매			
5199	기타			
51991	상품연쇄화사업	61160	식료품 및 기타	
51999	기타	61160	식료품 및 기타	
52	소매 및 소비용품수선업 (자동차 제외)			
521	종합소매			
5211	슈퍼마켓			
52110	슈퍼마켓	62020	슈퍼마켓	
5219	기타종합소매			
52191	백화점	62010	백화점	
52199	기타종합소매	62020	슈퍼마켓	
522	음식료품 및 담배			
5220	음식료품 및 담배			
52201	곡물	62110	곡물	
52202	고기	62120	고기	
52203	수산	62130	수산	
52204	수채소	62140	수채소	
52205	과실	62140	과실	
52206	설탕, 빵 및 과자	62160	음식료품중합소매	
52207	설식, 품 및 중합	62160	음식료품중합소매	
52208	설식, 품 및 중합	62160	음식료품중합소매	
52209	설식, 품 및 중합	62160	음식료품중합소매	



산 업 분 류		도 · 소매 업종분류		비 고
분 류	업 종	분 류	업 종	
523	비식용신품일반소매			
5231	의약품, 의약품 및 화장품 의약품 및 의약품 외과 및 정형 외과 용기구 화장품 화장비누			'의료용품'
52311		62410	의약품	
52312		62940	기타	
52313		62940	기타	
5232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 제품 섬유 및 직물 내의 의복 외신 의복 액세서리 의복 및 기타 가방 및 기타	62230	직물 및 직물제품	'섬유, 의복' '신발, 가죽제품'
52321		62210	의복	
52322		62210	의복	
52323		62220	신발, 가방	
52324		62210	의복	
52325		62220	신발, 가방	
52326		62210	의복	
52329		62220	신발, 가방	
5233	가정용기기, 가구 및 장비 가정용 전자기기 영상 및 음향장비 식탁 및 주방용품 악기 조명기구 및 전기기용제품 가정용 직물제품 등세공품 기타	62310	가구	
52331		62320	가정용기기	
52332		62913	가정용품	
52333		62320	가정용기기	
52334		62912	전기기재	
52335		62230	직물 및 직물제품	
52336		62913	가정용품	
52337		62320	가정용기기	
52339				
5234		철물, 페인트, 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철물 및 난방용구 페인트 유리제품 기타	62911	
52341	62940		기타	
52342	62940		기타	
52349				
5235	서적, 문구류, 사무 및 정밀기기 서적 및 신문	62612	서적	
52351				

산업분류		도·소매업종분류		비고
분류	업종	분류	업종	
52352 52353 52354 52355	문구용품 컴퓨터 기타 사무용품 안경 사진, 광학 장비 및 기기	62613 62320 62921 62922	문구 가정용기기 안경 사진 및 광학용품	
5236 52361 52362 52363	가정용연료 연탄 및 고체연료 액체연료 가스연료	62810 62810 62810	가정용연료 가정용연료 가정용연료	
5239 52391 52392 52393 52394 52395 52396 52397 52398 52399	기타 벽지 및 시계 동탁 및 오일 및 예술품 관광선물 전자제품 음반기 및 마루덮개 금속용품 기계용구 및 난동 제품 및 용구 및 전구 및 거부 및 테이프 및 기타	62611 62510 62931 62931 62932 62940 62940 62710 62940 62940	지물 장신구 및 시계 운동용구 운동용구 인형 및 장난감 기타 개인운수장비 기타 기타	
524	중고품 일반 소매			
5240 52401 52402 52403 52409	중고품 일반 소매 중고가구 중고서적 중고저당물 판매 기타	62310 62612 62940 62940	가구 서적 기타 기타	

### <부록 3> 종합소매업 상품분류

매장 부분별	상 품 명 예 시
1. 의 류	가. 의복(남녀외의, 내의, 아동복, 작업복등 각종재료의 의복) 나. 모자(남녀모자, 학생모자, 작업모자, 밀짚모자 등 각종 재료의 모자) 다. 신발(남녀구두, 고무신, 운동화 등 각종재료의 신발) 라. 가방(핸드백, 가방, 트렁크, 지갑, 열쇠케이스, 직물백 등 각종 재료의 가방) 마. 옷감(양복지, 양장지, 한복지 등 각종 옷감) 바. 의복 장신구(모조장신구, 단추, 핀, 버클, 허리띠, 지퍼 등 각종 의복용 장신구) 사. 기타(넥타이, 양말, 장갑, 머플러, 타월, 손수건, 스카프, 이불, 침대보, 베개, 수예품 등 각종 직물제품, 재봉사, 편물사 등 각종 실, 우산, 양산, 천막 등)
2. 식 료 품	가. 곡물(쌀, 보리, 콩, 조, 옥수수 등 일체의 곡물류) 나. 고기(소, 돼지, 닭 등) 다. 해산물(생선, 건어, 미역, 김, 다시마) 라. 채소(배추, 무우, 시금치, 상치, 파, 마늘, 고추 등) 마. 과일(사과, 배, 귤, 감, 포도, 밤, 대추, 복숭아 등) 바. 음료수(맥주, 소주, 탁주, 약주, 청주, 위스키 등 알콜성 음료와 우유, 콜라, 주스, 사이다, 유산균 음료 등 비알콜성 음료) 사. 담배 아. 기타(곡수, 설탕, 밀가루, 통조림 등 조제식품, 식용유, 소금, 조미료, 달걀 등) 자. 식당, 다방, 제과점

매장 부분별	상 품 명 예 시
3. 기 타	가. 가구(책상, 걸상, 옷장, 캐비닛, 침대, 응접세트등 가구) 나. 가정용 기기(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녹음기, 마이크, 헤드폰,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에어컨, 난방기구, 믹서, 재봉틀, 보온밥통, 토스터, 오븐, 악기, 레코드판, 녹음테이프, 카세트 등) 다. 의약품(각종 양약, 한약, 살충제, 살균제 등) 라. 화장품(향수, 크림, 로션, 화장비누, 샴푸 등) 마. 장신구(백금, 금, 은, 귀석 및 준귀석의 장신구) 바. 시계(손목시계, 탁상시계, 괘종시계 등) 사. 서적(각종 서적, 잡지 등) 아. 문구용품(노트, 벽지, 인쇄 및 필기용지, 카렌다 등) 자. 연료(석유, 가스, 알콜 등) 차. 안경 카. 철물및 전기기재(못, 볼트, 너트, 크립, 톱, 대패, 전구, 플러그, 스위치, 퓨즈, 전선 등) 타. 식기류(각종 접시, 주발, 냄비, 주전자, 물통, 칼, 도마등) 파. 운동용품(낚시, 스포츠 등의 장비) 하. 장난감(각종 재료의 장난감 및 인형) 거. 골동품(도자기, 서예품 등 각종 골동품) 너. 사진 및 광학용품(필립, 사진기, 쌍안경, 현미경 등) 더. 건설 및 건축재료(합판 및 시멘트 등) 러. 일용잡화(치약, 치솔, 구두약, 휴지, 세탁비누 등) 머. 화학제품(안료, 염료, 페인트 등) 버. 기타 원예, 분재, 생화, 종묘, 가금 및 가축류 서. 각종 수리, 가동, 크리닝, 세탁, 염색, 예식장, 극장, 기타 오락장, 진료소, 사진관, 미용실, 이발소 등 (단, 직영인 경우에 한함)

## <부록 4> 사업체 변동보고서 작성요령

### 1. 작성대상

대상사업체 중에서 사업체의 변동 발생시 작성하며 1매에 8개사업체까지 작성할 수 있다.

### 2. 변동내용 및 부호

사업체증가	변동내용(부호)	변동내용의정의
사업체증가	신규(05) 전입(01)	백화점이 새로 설립된 경우 기존 조사대상업체가 현재의 사무소(출장소) 관할구역으로 이동된 경우(도매업체만 해당)
사업체대체	휴업(03) 폐업(08) 업종변경(07) 응답불응(10) 기준미달(04) 전출(02)	일시적으로 영업활동을 중지한 경우 영업활동 중단 및 재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3개월이상 장기휴업 포함) 도·소매업동태조사 업종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 해당사업체에서 응답을 거부한 경우 백화점 및 슈퍼마켓의 매장면적이 기준이하로 떨어진 경우 기존 조사대상업체가 다른 사무소(출장소) 관할구역으로 이동된 경우(소매업체만 해당)
사업체변동	명칭변경(15) 소재지(16) 변경(19) 재가동(14)	업종은 바뀌지 않고 명칭만 변경한 경우 동일 사무소(출장소) 관할구역내에서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휴업중이던 사업체가 영업활동을 재개한 경우 전화번호, 조사담당자 변경시 작성

### 3. 작성방법

○ 윗줄에는 변동전내용을 아랫줄에는 변동후의 내용을 기재한다.

가. 사업체증가 : 윗줄에 모든 내용을 기재한다.

나. 사업체대체 : 윗줄에는 사업체번호-조사담당자ID, 사업체명, 변동부호, 변동년월을 기재하고, 아랫줄에는 대체사업체 발견시 변동부호, 변동년월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기재한다.

다. 사업체변동 : 윗줄에는 사업체번호-조사담당자ID, 사업체명, 변동부호, 변동년월, 변동전 내용을 기재하고, 아랫줄에는 사업체번호-조사담당자ID, 사업체명, 변동후 내용을 기재한다.

### 4. 제출방법

○ 매달 20일까지 BBS, 우편 또는 FAX로 조사관리과에 도착되도록 한다.

## 〈부록 5〉 조사기록부 작성 및 활용 방법

1. 조사기록부는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사담당자가 대상업체의 사업내용을 유지, 관리하고 실적변동의 원인을 현장에서 파악하여 정확한 보고가 되도록 하기위해 작성한다.
2. 기록항목은 조사표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조사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개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조사내용의 착오시 충분한 설명자료가 될 수 있게 한다.
3. 이 자료는 해당 사업체의 전년도 월별 판매액이 기재되어 전월비와 전년동월비 증감원인이 분석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업무분장 등으로 자신이 담당하지 않았던 사업체를 인수하게 되면 업무인수인계시 과거 실적 자료도 같이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4. 매장면적은 사무실(계산대), 매장 등 실지 영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입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 Ⅲ. 조사표 기입방법 의 예시 참조)

사업체번호		상 품 분 류	
사업체명			
영업형태		주요취급상품	일일판매액
작성근거	①장부 ②기억	매장면적(m <sup>2</sup> )	사무실
			매 장
			기 타

월	1995 (전년)		1996 (금년)				
	판 매 액	영업일수	판 매 액	의 류	식 료	기 타	영업일수
1	14000	25	15600				24
2	16500	26					
3	15400	24					
4	28760	26					
5	25000	26					
6	14000	25					
7	15000	24					
8	17000	24					
9	26000	26					
10	18000	25					
11	17500	25					
12	16000	24					





<부록 6> 사무소, 출장소 및 복무위탁지별 사무소부호 및 USER-ID

사 무 소	USER-ID	사 무 소 부 호
서 울	V01	A0
부 산	V61	B0
경부인성의 정 기천천남부	V26 V22 V21 V19 V18	C0 C2 D0 E0 F0
대경포구안 구주항미동	V31 V37 V36 V38 V39	H0 H1 H2 H4 H8
대전서보 전안산령	V51 V55 V54 V53	L0 L1 L2 L3
강원강 원주릉	V41 V43 V46	I0 I1 J0
청충제 주주천	V56 V58 V59	K0 K1 K2
전 주	V81	M0
광목여순영 주포수천암	V86 V88 V90 V89 V94	G0 G1 G2 G3 G4
경진 남주	V71 V76	N0 N1
울 산	V66	O0
제 주	V91	P0



승인번호  
제 10123호

# 도·소매업동태조사표

(199 년 월분)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8조에 의해 비밀이 보호됩니다.

작성기관: 통계청

1. 사무소번호 및 사업체번호		조사담당 ID 번호	유고 코드
사업체명	대표자		조사표 작성근거
소재지	① 장부 ② 기억		

2. 영업 형태	3. 월간영업일수
① 도매 A·B ② 소매업 ③ 백화점 ④ 슈퍼마켓	일

4. 매장면적	5. 주요 취급 상품	
m <sup>2</sup>	상품명	업종분류부호

항목	월별 금액	금월							전월							
		요일	요일	요일	천	백	십	단	천	백	십	단	천	백	십	단
6. 월간 판매액																
① 의류																
② 식료																
③ 기타																
7. 월간 구입액																
8. 월말 재고액																

9. 종사자 수				
항목	성별	계	성별	
			남	여
①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② 상용종사자				
③ 임시 및 일일종사자				
④ 합계				

\* 증감내용 및 기타 변동사항

[ 판매액 ] .....

[ 구입액 ] .....

[ 재고액 ] .....

[ 기타 ] .....

부서 및 전화번호	조사담당자	인
응답자	내검자	인

조사표 기입요령

1. 사무소번호 및 사업체번호, 조사담당 ID번호 : 지정된 번호를 기입  
 ※ 유고코드 : 해당되는 코드를 기입  
 (01 전입, 02 전출, 03 휴업, 04 기준미달, 05 신규, 07 업종변경  
 08 폐업, 10 응답불응, 11 사업체대체)
2. 영업형태 : 해당번호에 ○표
3. 월간영업일수 : 실제 영업일수를 기재
4. 매장면적 : 상품의 판매 목적으로 사용되는 연면적(사무소, 창고 포함)  
 ※ 백화점은 직영매장면적을 기입
5. 주요취급 상품명 : 취급상품 중 판매액 비중이 큰 상품명과 해당 업종  
 분류부호를 기입
6. 월간판매액 : 거래된 상품의 월간 총판매액(외상판매포함)  
 ※ 도매업·소매업 : 합계란만 기입  
 종합소매업(백화점, 슈퍼마켓) : 의류, 식료, 기타로 구분 기입
7. 월간구입액 : 조사 당월 구입된 총상품의 구입액을 기입
8. 월말재고액 : 조사당월 말일 현재 판매목적으로 보유된 총상품의 구입  
 가격을 기입
9. 종사자수 : 조사당월 말일 현재의 종사자를 남·여로 구분 기입
  - ①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 개인 경영업주와 그 가족 중 급여 형태  
 의 보수는 받지 않으나 경영에 참여하는 자
  - ② 상용종사자 : 1개월 이상 고용기간을 정하고 일정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③ 임시 및 일일종사자 :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고용된 자  
 또는 일일로 고용된 자

※ 증감내용 및 기타 변동사항

- 실적 부분의 증감 변동이 큰 사업체의 경우 자세한 증감내용을 기입

용어해설

판매액

- 현금판매, 외상판매, 일부판매의 총액
- 주요취급상품분, 기타취급상품분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수입 금액
- 자가소비한 상품은 매출시가로 평가
- 부가가치세 포함 ※ 수출액 제외

백화점

- 단일 경제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시설을 갖추어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 매장면적이 3,000㎡이상으로 50%이상 직영하는 대규모  
 종합소매업(임차사용의 경우 30% 이상 직영)

슈퍼마켓

- 단일 경영체제하에 식료품을 위주로 각종 상품을 진열  
 하고 자기구매통행(셀프서비스)으로 운영되며 매장면적이
- 서울시의 경우 250㎡이상
- 기타 지역의 경우 165㎡이상인 종합소매업